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33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김상훈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정태, 이영실, 김경영, 강동길,  
이병도, 고병국, 우형찬, 김태수,  
김종무, 김제리 의원 (10명)

## 1. 제안 이유

- 현행 조례는 택시요금 1만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액 택시요금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임
- 택시요금에 대한 카드결제가 일상화 되어 있어 택시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소액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일부 경감 시킴과 동시에 택시이용 시민의 카드결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코자 함

## 2. 주요 골자

- 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 사항

- 가. 관련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19년 12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에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됨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용
  - 법인택시 22,603대, 개인택시 49,225대 총 71,828대
- 택시 데이터 통신료 지원 비용 : 운행정보 수집

#### 나. 전제

- 카드결제금액은 2019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2020~2021년도만 산정함
- 10,000원 이하의 택시요금만 카드수수료 지원함
- 위법행위 택시(행정처분 대상)는 제외

#### 다. 추계 기간

-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2020~2021년도만 산정함

#### 라. 방법

-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를 기초로 작성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5,200,000천원(연간 7,6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2(10\text{천원이하 카드결제액 수수료 지원})_i + \sum_{i=1}^2(\text{데이터통신료 지원 비용})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1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데이터통신료 지원 (조례안 제2조)	2,000,000	2,000,000	-	-	-	4,000,000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2조)	5,600,000	5,600,000	-	-	-	11,200,000
	소계(b)	7,600,000	7,600,000	-	-	-	15,200,000
□ 총 비용(b-a)		7,600,000	7,600,000	-	-	-	15,200,000

####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석관(주무관) 이수연

☎ 02-2180-7945

e-mail : sooyeon7@seoul.go.kr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금

###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5,200,000천원 (연평균비용 7,6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2$ (10천원 이하 카드결제액 수수료 지원)<sub>i</sub> +  $\sum_{i=1}^2$ (데이터통신료 지원 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0~2021년)

※ 2019년 택시 이용대금 카드결제건수 개인택시 53,345천 건, 법인택시 41,467천 건

- 1만 원 이하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 11,200,000천원(연간 5,600,000천원)

- 법인택시의 경우 주간 5,000원, 야간 6,000원 지원
- 개인택시의 경우 주간은 해당하지 않고, 야간은 8,000원 지원

※ 야간: 20시부터 07시 59분까지

- 카드결제 금액에서 T-Money사에서(개인택시 1.1%, 법인택시 1.6%) 수수료 공제 후 지원

- 택시 데이터 통신료 지원 비용 = 4,000,000천원(연간 2,000,000천원)

- 택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카드결제 통신비를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지원

※ 통신비 중 STIS를 통하여 택시 이용고객의 승하차 정보, 고객정보, 운행거리, 운행비용 등 데이터의 98%를 서울시가 이용함

- 이 기록을 통하여 10천원 이하의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지원

※ 수수료 지원 제외 택시

-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서비스 평가를 반영하여 평가결과 차등 하위 30%에 해당하면 카드 수수료 미지급
- 법인택시는 택시서비스 평가 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카드수수료 보조금 미지급
- 개인택시는 매월 정상운행일이 10일(50%)미만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카드수수료 보조금 미지급